

「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과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지역 음식축제, 식품박람회 등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행사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위생관련 단체 등 용어의 정의 추가 및 삭제(안 제2조)
-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내용 명확히 규정(안 제3조 및 제4조)
- 행사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4조제1항제3호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 - 「관광기본법」 제6조
 - 「외식산업 진흥법」 제3조

-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, 제47조의2,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
-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, 제14조, 제16조

○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

○ 합 의: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○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위생업소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, 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행사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위생업소 및 위생관련 단체에 대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 하여 위생단체의 교육, 축제, 경연대회, 사회봉사활동 등에 대한 폭넓은 지원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행사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